

원자력전용품목(Trigger List Items) 수출시 국내 규정의 이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Analysis on the problems of exporting Trigger List Items and
Implementing Export Control Regulations

김종숙, 김병구, 이종숙, 이재성, 민경식

요 약

국내 원자력전용품목의 수출 관련 규정은 대외무역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전략물자수출
입공고가 그 기반을 이루고 있다. 동 공고의 제53조는 원자력관련 품목의 수출통제 원칙을
규정하고 그 내용은 원자력비확산 체제 관련 품목의 수출 또는 재수출은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는 수출통제 지침으로서 품
목의 수출시 수입국 정부의 공식보증, 재이전 사전동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53조의 이행
시 문제점은 원자력전용품목을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s)으로 수출할 경우이
다. 본 논문은 핵무기 보유국으로의 수출시 제53조의 규정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제 수출통제 지침의 고찰 및 이들
국제 지침의 국내 규정에의 도입과정등을 살펴봄으로써 원래의 수출통제 원칙의 기본 방침
을 국내 규정에 되살려 허가권자와 국내 기업 모두에게 이행가능한 규정으로의 개정을 제안
하였다.

Abstracts

The legal basis of Korean nuclear export control is the Foreign Trade Act, Implementation Decree (Presidential Decree) and Ministry's Notice (Public Notice) under the Foreign Trade Act provides the control list, licensing procedures, etc. The article 53 of Public Notice regulates that export and reexport of items as prescribed in Appendix 10 shall be permitted only when said items are to be used for peaceful purposes. The article 54, its title is guidelines of export control, provisions about the governmental assurance for the peaceful use and prior consent for retransfer, etc. The problem can be raised for implementing the article 53 is when exporting of Trigger List items to the Nuclear Weapon Stat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is points related to the export control principle of Public Notice and to show the solution through reviewing international export guidelines and procedure of setting into forth to the domestic export systems of these guidelines. As a result, this paper proposed to amend the article 53 of the Notice in order to distinguish the scope of applying the control principle between NWS and NNWS.

1. 서론

국내 원자력산업 기술 수준은 영광 3,4호기와 울진 3,4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통해 한국표준원전(KSNPP) 기술의 확립을 통해 국산화율이 약 95%에 달함으로써 원자력전용품목(Trigger List)의 수출기반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내 원자력설비 관련 업계는 이미 중국의 진산 원자력발전소로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증기발생기를 비롯한 주요 열교환기 등의 원자력발전 설비를 공급하고 있는 등 활발한 해외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국내 원자력관련 기업의 수출 활동이 빈번해 지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듯 원자력 산업이 하나의 수출전략 산업이 된 실정을 감안할 때, 원자력 품목의 국제적인 이전(수출)을 통한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립된 국내 원자력 수출통제 규정이 실제 이행 및 준수에 적합한지의 고찰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원자력전용품목의 수출 허가시 적용되어야 할 국내 수출통제 규정상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국내 원자력 관련 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출 활동에 저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2. 본론

2.1 국내 원자력 수출통제 관련 규정

2.1.1 법적 체계

국내 원자력전용품목의 수출시 적용되는 관련 규정은 대외무역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수출입공고(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46호)를 그 기반을 이루고 있다. 동 공고는 1993년 7월 1일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33호로 제정되었고 1994년 6월1일 전문개정된 바 있고 1999년 5월 17일 현재 총 7회의 개정을 거쳤다. 동 공고는 Wassenaar Arrangement(바세나르 체제), MTCR(미사일 비확산체제), AG(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 NSG(원자력 비확산체제) 등의 국제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에서 다루는 품목들의 수출시 허가와 관련된 규정들을 다루고 있으며 원자력전용품목(Trigger List) 및 원자력관련 이중용도품목(dual-use items)에 대한 통제 규정은 제3장 원자력관련 비확산품목에 대한 수출통제의 제52조(통제품목의 범위)에서부터 제60조(수출입보고)로 구성되어 있다.

2.1.2 제53조 및 제54조의 내용

동 공고의 제53조는 수출통제원칙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별표 10에 계기된 품목의 수출 또는 재수출은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별표 10은 원자력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을 명시한 것으로 제1부 원자력전용품목과 제2부 원자력관련 일반산업용물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력전용품목에는 핵물질, 시설과 장비(부품포함) 및 기술이 포함된다.

한편, 제54조는 수출통제 지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전술한 별표 10의 1부와 2부에 대하여 각각 수출통제 대상 품목 리스트에 나열된 물자의 수출을 허가할 때 지켜야 할 지침들을 언급한 것이다. 여기서는 1부 원자력전용품목 수출과 관련된 지침들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 ① 품목의 수출시 평화적 이용에 대한 수입국 정부의 공식보증
- ② 품목의 불법사용, 취급방지를 위한 물리적 방호에 대한 수입국과 합의.조치
- ③ 당해 품목의 수송에 대한 정부간 특별약정 체결
- ④ IAEA와의 전면안전조치협정 이행
- ⑤ 수입국이 당해 수출품목의 재수출시 사전동의
- ⑥ 당해 품목과 직접 관련된 기술 및 파생기술의 수출시 상기 1)-5)의 지침 적용 및 세부기술이전지침은 별표 5에 명시
- ⑦ 농축·재처리·중수시설과 기술수출 제한
- ⑧ 상기 1)-7) 이외의 사항은 별표 2의 “원자력전용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NSG Guideline)”의 준용 등이다.

2.1.3 동 공고의 이행시 제기되는 문제점

이상 살펴본 제53조와 54조의 이행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국내 기업이 원자력전용품을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s) 으로 수출할 경우이다. 규정의 적용 대상 내지는 범위를 수출 또는 재수출의 경우 핵무기 보유국, 핵무기 비보유국 구분없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출을 허가한다는 선언적인 규정의 제53조와 그 규정에 의한 수출통제 지침을 정하고 있는 제54조의 규정을 실제 이행할 때의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예컨데, 미국과 같은 핵무기 보유국에 우리 기업이 원자력전용품의 일부를 수출할 때의 경우이다. 자국의 핵정책에 따라 핵무기 생산과 관련 된 시설 내지는 원자력발전소로예의 사용을 위해 우리 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핵무기 보유국에서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용만이 아닌 용도로 쓰고자 할 경우 당해 품목의 용도 자체를 평화적 목적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으로 한정된 규정에 의해 일단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의 용도가 반드시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수출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핵무기 보유국이 제54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 당해 수출 품목을 핵폭발장치 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평화적 이용 보증(제54조 ①항의 1)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2.2 국제 수출통제지침 적용의 기본 원칙

ZC나 NSG와 같은 국제 다자간수출통제 체제가 발족하게 된 계기는 NPT 조약 3조 2항을 구체적인 시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였다. NPT 조약 3조 2항의 내용은 핵분열성물질 및 관련 장비가 핵무기 비보유국으로의 이전시 IAEA의 안전조치가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즉, NSG나 ZC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핵무기 보유국 이외의 더 이상의 핵무기 보유국의 증가를 방지하고 했던 기본적인 통제 철학 내지는 방침이었고 또한, Trigger List 품목의 주요 공급국(Suppliers Group)은 주로 핵무기 보유국이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즉, 원자력관련 품목의 국제 이전시 수출의 경우 통제 대상의 적용범위는 핵무기 보유국에서 핵무기 비보유국으로의 이전에 대한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핵확산 방지의 한 수단으로서의 수출통제의 각 지침들을 제시하여 각 회원국 (Subscribing Governments)이 이러한 지침은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수립될 때 법적 효력을 가지고 된다. 쟁거위원회 (Zangger Committee)와 원자력공급국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의 가이드라인에서 나오는 수출통제 지침 적용 범위를 살펴본다.

2.2.1 ZC의 수출통제 지침

ZC 가이드라인(INFCIRC/209)은 MEMORANDUM A와 B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MEMORANDUM A는 핵무기 비보유국으로의 선원 또는 특수 핵물질 수출시 준수해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원문을 참조해 보면,

1. Introduction

The Government has had under consideration procedures in relation to exports of nuclear materials in the lights its commitment not to provide source or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to any non-nuclear-weapon State for peaceful purposes.....

MEMORANDUM B는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특수핵물질의 처리, 사용 또는 생산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장비 등을 수출시 관련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 Introduction

The Government has had under consideration procedures in relation to exports of certain categories of equipmnet and material, in the light of its commitment not to provide equipment or material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for the processing, use or production of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to any non-nuclear-weapon State for peaceful purposes....."

2.2.2 NSG의 수출통제지침

NSG의 수출통제지침(INFCIRC/254/Part 1)은 IAEA의 안전조치와 수출통제의 기본 원칙(basic principles)의 적용 대상으로 통제대상 품목의 수출의 경우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하여, 재수출의 경우에는 핵무기 보유국, 핵무기 비보유국 모두를 포함하여 적용하기 위한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원문을 참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The following fundamental principles for safeguards and export control should apply to nuclear transfers for peaceful purposes to any non-nuclear-weapon State and, in the case of control on retransfer, to transfers to any State.

3. 전략물자수출입공고내 원자력관련 품목의 수출통제 규정의 수립 과정

이상의 국제 수출통제 지침이 국내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의 수립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었고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현행 공고의 제53조 수출통제 원칙이 원래 의도하는 바를 분석하고 하여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NSG 및 ZC에 가입하게 된 경위로는 '90년대 초반에 한국이 원자력수출 잠재 국가로 인정되므로써 수차례 가입을 권고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1994년 12월 정부내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NSG, ZC에의 가입을 확정하고 다음해인 1995년 4월 NSG 사무국에 가입 신청하였다. 그리고 '95년 8월 국내 수출통제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들어갔고 10월 17일 NSG에는 32번째 서명국으로, ZC에는 31번째 서명국으로 가입하였다. 그리고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공고(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109호)가 1995. 10. 18일자로 발효되었다.

즉, '95년 양 체제에 가입과정을 통해 공고의 원자력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지침, 수출허가요건, 통제대상 품목, 수출제한지역 등의 내용들은 NSG와 ZC의 가입

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당시 정부 문서인 “NSG 체제가입에 따른 대책(1996. 3. 27, 통상산업부 무역협력과)”에 NSG 가입에 따른 향후 수출입통제 제도의 구축 계획의 기본 방침이 첫째, NSG 통제 지침에 최대한 접근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수출통제제도 구축하는 것과 둘째, 국제 질서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출입 통제제도로의 발전 및 보완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또한 과학기술부 시행 원자력중·장기계획사업의 연구보고서인 “원자력수출제도 효율화방안 연구(KAERI/ RR-1678/97)”에 분석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내용의 전략물자수출입공고 및 전략기술수출공고의 특징은 NSG와 ZC의 지침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수출통제원칙으로서 원자력전용품목의 수출 또는 재수출은 평화적 목적인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며...”로 되어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NSG, ZC의 수출통제의 기본 방침은 핵무기 보유국의 증가 즉, 수평적 핵확산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핵무기 비보유국에서 핵무기 보유국으로의 이전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것으로는 볼 수 있다. 우리 기업이 핵무기 보유국에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출할 경우 국제적인 관례는 통제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평화적 이용보증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양국간 협력협정에 따라 재이전시 사전동의에 대해서는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이행중인 전략물자수출입공고의 제정 과정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동 공고의 제53조(수출통제원칙)은 국제 수출통제 지침인 NSG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을 근거로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동 공고 제53조에 이러한 지침의 적용대상을 분명히 명시하지 않고 평화적 목적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 개발 수준의 향상과 함께 국내 수출전략산업의 하나인 원자력관련 설비의 수출은 앞으로도 매우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핵무기 보유국으로의 수출도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때, 국내 규정의 비합리성으로 인해 국제 지침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지나치게 강화된 규정을 이행하기에는 수출 허가권자나 기업에게 모두 부담이 되고, 또한 핵무기 보유국에 평화적 이용에 대한 공식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

인 통제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 기업이 핵무기 보유국으로의 수출의 경우 수출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내 원자력수출 통제를 적법한 이행을 통해 국제 수출통제 지침의 준수와 국내 기업의 원활한 수출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제53조 수출통제원칙의 적용대상을 핵무기보유국과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Guidelines For Nuclear Transfers (INFCIRC/254/Part 1)
2. Zangger Committee Guidelines ; Memorandum A & B (INFCIRC/209)
3. 대외무역법
4. 대외무역법 시행령
5. 전략물자수출입공고
6. 원자력수출제도 효율화방안 연구, 한국원자력연구소, KAERI/RR-1678/97